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62 발의연월일: 2022. 5. 19.

발 의 자: 김상훈·박대출·정우택

송석준 · 김선교 · 하영제

지성호 · 송언석 · 배준영

태영호 · 강대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소음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소음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있음.

현행법과 같이 체납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가산금을 고정액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하루만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가산금의 총액이 즉시 부과되므로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반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담금 등의 가산금 규정에 일 단위 부과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소음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및제5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아니하면"을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으로, "100분의 3"을 "100분의 1"로, "부과할 수 있다"를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4항·제5항"으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소음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소음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부담금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소음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혅 행 아 제1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제1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 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소음 -----<u></u>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 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체납된-----100분 의 1-----수하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 부의무자가 체납된 소음부담금 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 납된 소음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 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 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 액을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기간에 소음부담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금의	총액은	체납된	크 소음	부담
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u>없다.</u>				
<u>6</u>				
			<u>z</u>]4항
<u>· 제5</u>	<u> ই</u>			
			.	